

별첨2

계약직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 신규계약직 직급부여기준

구 분	자 격 기 준
가급 (과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■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■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
나급 (대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■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■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
다급 (주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수준의 자격을 소지한 자